

창원지방법원 2020. 5. 20 선고 2020가단106186 판결 [계약금반환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경

피 고 B

판결 선고 2020. 5. 20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9. 11. 29.부터 2020. 3. 30.까지는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: 별지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예지희